63.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적용 특별약관

제1조(적용대상)

이 특별약관은 「장애인 복지법」, 「장애인 복지법 시행령」 및 「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」(이하「법령」이라 한다.) 에서 정한 '장애등급판정기준'에 연동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(이하 '장애등급 연동계약'이라 합니다)에 적용합니다.

제2조(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)

- ① 이 특별약관은 장애등급 연동계약을 체결할 때, 또는 기존계약 중 장애등급 연동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 (이사 '회사' 라 합니다)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.
- ② 이 특약에 의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장애등급 연동계약에서 '장애등급 판정기준'이 변경 또는 폐지된 날부터 적용됩니다.
- ③ 장애등급 연동계약이 해지(解止),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.

제3조(특별약관의 내용)

이 특별약관은 장애등급 연동계약에서 '장애등급 판정기준'이 변경 또는 폐지되었을 때, 장애등급 연동계약에서 정한 보장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.

제4조(특별약관의 적용)

- ① '장애등급판정기준'이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등급 판정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법령의 개정으로 '장애등급판정기준'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장애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'장애등급판정기준'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심사·판정합니다.
-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,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이전의 보험금 지급사유와 동등한 보장을 계약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회사가 심사·판정한 장애등급 결과에 대해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와 회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. 제3 자는 의료법 제3조(의료기관)에 따른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, 장애등급 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.

제5조(준용규정)

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.